
**2008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
지원사업 추진계획**

2008. 6.

**이용자네트워크국
방송환경개선팀**

I . 추진 배경

- o 미디어가 정보 및 지식을 획득하는 필수수단이 되었음에도,
 -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한과 방송프로그램의 부족에 따라 장애·비장애인간 정보격차 심화 및 커뮤니케이션 소외문제 발생
 - * '07년 9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209만여명이며, 이 중 청각장애인은 20여만명(9.5%), 시각장애인은 22여만명(10.3%)임
- o TV가 가치관 형성 및 문화파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,
 - 미디어 중독, 모방범죄 등 방송역기능이 나타남에 따라 어린이·청소년 등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 및 이해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가

II. 그간의 추진실적

(방송수신기) '00~'07까지 74.8억원을 지원하여 총 8.52만대의 방송수신기를 보급, 그 중 자막방송용 2.5만대, 화면해설방송용 1.7만대, 난청노인용 4.3만대 보급

* 보급률('07년 누적) : 자막방송수신기 12%, 화면해설방송수신기 7%, 난청노인용수신기 3%

(방송제작) '06년 이후 장애인 대상 방송제작 지원(34.7억원)을 통해 총 방송시간 대비 장애인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이 '06년에 비해 '07년도에 15.2%상승

* 지상파4사 기준 : 자막방송 64.2 → 78.1%, 수화방송 3 → 3.8%, 화면해설방송 4.9 → 5.4%

(미디어 교육) '06년 이후 14억 원을 지원하여 교재개발(종합자료집·초등학교 교재) 및 미디어교육 활동 활성화

* 교재개발(교육교재 6종 30,000부, 동영상교재 2종 10,000개), 교육활동 : 18개 단체, 11개 학교 지원

III. 2008년 사업추진계획

1. 사업 추진방향

수혜자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

- 수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막방송 칩이 내장된 TV수신기 보급 및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한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보급
- 지상파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의 장애인 방송제작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다양한 매체의 다양한 방송이 시청 가능한 방송환경 조성
- 교육단계별 미디어교육 교재개발, 단체 및 학교 미디어교육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혜택 확대
- 지원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강화 및 만족도 제고

2. 사업 지원근거

- 방송법 제38조(기금의 용도) 8호, 제69조(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) 제8항, 시행령 제52조(장애인의 시청지원), 규칙 제20조(장애인의 시청지원)
- 장애인 복지법 제4조(장애인의 권리), 제22조(정보에의 접근), 시행령 제14조(수화·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)
-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 제3항
- 관계부처 합동(구 정통부, 방송위 포함),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('06. 9. 4)

3. 사업별 추진내용

①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(24억 원)

(사업내용)

- 자막(5,000대 이상) · 화면해설(5,000대 이상) · 난청노인용(9,000대 이상) 방송 수신기를 보급하되, 중증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 보급
- 시 · 청각 장애학생 대상으로 자막 · 화면해설 EBS수능 방송물을 4과목 이상 제작하여 DVD와 웹방식으로 보급
- 기타 장애인 방송접근권 증진에 기여 가능한 창의적 기획사업* 지원

* 방송편집 등 장애인 전용 미디어 교육과정, 장애여성 및 청소년 대상 방송교육 등

(사업 수행주체) 1년 이상 장애인권익보호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· 법인 이거나,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· 법인을 선정

(기대효과) 수신기 보급률(자막방송수신기 기준)을 확대하고('07년 12.2% → '08년 12.5%), 장애 유형별 방송물을 제공하여 장애인 방송접근권 증진

② 장애인 대상 방송제작 지원(30억 원)

(사업내용)

- 지상파 4사 및 방송채널사업자의 자막 · 수화 ·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
-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수화방송 제작 지원
- 각 방송사의 장애인 프로그램 방송 홍보 지원

(지원방법) 중앙/지역방송사, 공영/상업방송, 장애인 선호 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와 매칭(선방송 후지원)으로 지원

- o '08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 사업자 (지상파4사 + 지역방송 22국) 및 공모를 통한 PP지원

(기대효과) 총 방송시간의 80%, 장애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(뉴스, 드라마) 90% 이상을 장애인 대상 방송을 편성(지상파 4사 자막방송 기준)하여 정보획득 기회 향상

③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제작(3억 원)

(사업내용) 미디어교육 내실화 및 과학적 체계구축을 위한 교재 신규개발

- 중학생용 미디어 교육교재 개발
- 미디어교육아카이브 업데이트 및 운영

(사업 수행주체) 언론학회 · 방송학회 · 미디어교육학회 등 학술단체

(기대효과) 대상별 맞춤형 교재개발로 미디어 활용능력 및 이해도 향상

④ 미디어교육 활동지원(2억 원)

(사업내용)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등 지원

- 초 · 중고 미디어교육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
- 저소득층 · 다문화 가정자녀를 위한 공부방 방송기자재 및 미디어교육 지원
- 미디어중독 예방활동 지원

(사업 수행주체) 미디어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 및 단체, 공부방 운영 기관, 미디어중독상담센터 운영 단체

(기대효과) 다양한 단체의 미디어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여 올바른 미디어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방송역기능 예방

4. 사업자 선정계획

① 사업자 선정 원칙

-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단체 선정

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(위원구성)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접 관련된 인사는 배제하고, 사회복지, 미디어, 법률,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~2인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 구성

(운영방안) '07년 사업 결과평가, '08년 사업심사 및 사업자 선정

(심사대상 사업) '07, '08년 공모 사업 일체

-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및 수능 방송물 보급사업
- 장애인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획사업
- 미디어 교육 사업

※ 비공모사업 : 장애인 대상 방송제작 지원(PP제외)

③ 심사기준

- 5개 평가지표를 설정, 9개 세부평가항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

구분	평가지표	심사기준	배점	비고
사업계획 (50점)	사업목표(20점)	① 사업목표의 명확성, 목표의 이해도	10	비계량
		② 시청자권의 실현 가능성	10	
	사업내용(30점)	③ 사업목표와의 부합성	10	
		④ 실현가능성	10	
		⑤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	10	
신청단체 (10점)	단체역량(10점)	⑥ 상근인력의 존재여부 및 외부전문가 활용 정도, 유사 사업 수행경험	10	
예산편성 (20점)	예산편성(20점)	⑦ 예산편성의 적정성	10	계량
		⑧ 자부담비율(15%이상, 15%미만, 10%미만)	10	
평가결과 (20점)	평가결과(20점)	⑨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결과(평가점수X20%) ※ 신규신청단체는 전년도 평가결과 평균점수	20	
총 점			100	

※ 단, 신규신청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은 20점,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 결과 평균점수 반영은 10점으로 함